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나6511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나6511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1가단519542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김준동, 이준석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현휴, 김용현

변론 종결 2024. 9. 25.

판결 선고 2024. 10. 23.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1가단519542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 한다)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2. 1. 체결한 매매예약계약 및 2021. 5. 31. 체결한 매매계약은 "101,483,68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8%, 그다음 날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 및 변론내용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3째 줄 "피고 A 주식회사"를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로, 4째 줄 "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를 "이하 'A'이라 한다"로 각 고쳐 쓰고, 제1심판결의 "피고 A"을 모두 "A"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의 "피고 B"를 모두 "B"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아래에서 3째 줄 "2012. 2. 1."을 "2021. 2. 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쪽 각주 1)1) 1째 줄, 제7쪽 15째 줄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쪽 15째 줄 "증인 K의 증언"을 "제1심 증인 K의 일부 증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쪽 9째 줄 "진술한 점" 다음에 "⑤ 제1심 증인 K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P 법무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를 확인하고, 피고에게 채권, 채무관계 이렇게 있다고 설명해주었으며, 가압류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진술한 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9쪽 10째 줄 "증인 K, M의 각 증언만으로는"을 "제1심 증인 K, M의 각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쪽 아래에서 4째 줄 "각 말소된 사실이"를 "각 말소되고, 같은 날 H, Q, R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황순교

판사변성환

판사양형권

별지

1) 이 법원의